

# 2021년 달라지는 세법

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 
활력 복원



##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



### 01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

-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

	현행	개정
대상 자산	9개 특정시설	▶ 모든 일반사업용 유형자산 * 토지, 건물, 구축물 등 제외
기본 공제율	중소 기업 10% (신성장사업화 시설 12%)	중견 기업 3% (신성장사업화 시설 5%)
	대기업 1% (신성장사업화 시설 3%)	
추가 공제율	+ 투자증기분의 3%	

\* 종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(R&D 비중, 상시근로자 수 등)은 폐지

- 뉴딜 인프라펀드 및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

	뉴딜 인프라펀드	공모 투융자펀드
지원 내용	뉴딜 인프라에 50% 이상투자하는 펀드에 투자 시 배당소득 9% 분리과세(2억원 한도)	공모 투융자펀드 전용계좌를 통한 투자 시 배당소득 14% 분리과세(1억원 한도)

### 02 소비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.

- 적격증빙이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상향

· 기준금액 상향(1만원 이하 → 3만원 이하)

-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

	현행	개정
기준 금액	연간 3만원, 개당 1만원 이하	▶ 연간 5만원, 개당 3만원 이하

### 03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신성장·원천기술 R&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

	현행	개정
대상기술	12개 분야 223개 기술	▶ 12개 분야 240개 기술*

\* 디지털 뉴딜(빅데이터 등 9개), 그린 뉴딜(탄소 저장 등 12개), 의료·바이오 기술(신체기능 보조 등 4개) 추가, 세제지원 부적합 기술 8개 제외

- 유망 중소기업 출자 시 세제지원

대상 기술	벤처 캐피탈	출자 → 주식양도차익·배당소득 비과세	특화선도기업 (중소기업)
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-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

	현행	개정
인력요건	외국인 연구원	▶ 이공계 등 학사학위 + 5년 이상 R&D 경력 또는 이공계 등 박사학위 + 2년 이상 R&D 경력
취업기관	외국인투자기업 R&D 센터	▶ 기업부설 연구소·연구개발전담부서, 정부출연 및 대학·대학부설 연구기관

- 유턴기업 세제지원

	현행	개정
복귀방식	국내 사업장 신설	기존 국내사업장 증설도 가능
해외생산	생산량 50% 이상 감축	폐지
지원내용	국내복귀 소득에 따라 세액감면	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여 세액감면

##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·공정 강화



### 01 | 서민·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

	현행	개정
기준 금액	4,800만원 미만	8,000만원 미만

-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

	현행	개정
중소기업	수출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	수출비중 30%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
중견기업	수출비중 50% 이상	수출비중 30% 이상

### 02 |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세 확대

	현행	개정
직종 범위	공장 근로자, 어업 종사자 등 단순노무직, 미용·숙박· 조리 등 서비스관련 종사자	텔레마케팅, 대어 판매업,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추가
사업자 요건	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, 과세표준 5억원 이하	폐지

- R&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

	현행	개정
인력 개발비	위탁훈련비,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현장실습비 등 포함	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지급한 현장실습비 추가

- 근로·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

	현행	개정
기준금액	지급받은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원까지 압류금지	185만원까지 압류금지

### 03 | 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.

- '일시적 1주택 1분양권'을 '일시적 1주택 1입주권'과 동일하게 적용

	현행	개정
일시적 1주택 1분양권	(20.12.31 이전 취득한 분양권) 분양권은 주택 수에 미포함 *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 일시적 1주택 1입주권에 해당하는 주택은 비과세 인정, 2주택자 증가 제외	(21.1.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)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*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해당하는 주택은 비과세 인정, 2주택자 증가 제외

-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\* 추가

	현행	개정
과세 대상	국내·외 주가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, 국외 장내파생상품 등	차액결제거래 추가

\* 차액결제거래(CFD) :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

- 고액·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

	현행	개정
제외 사유	체납액 30% 이상 납부	최근 2년간 체납액 50% 이상 납부

##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



### 01 |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.

-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

	현행	개정
가액 기준	공시가격 6억원 이하	공시가격 9억원 이하

-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임대소득 제외

	현행	개정
총 급여액*	근로소득, 사업소득 (부동산 임대소득 포함), 종교인소득	부동산 임대소득 제외

\*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

### 02 |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.

-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

	현행	개정
사전 통지 항목	인적사항, 세무조사 기간, 세무조사 대상 세목 등	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추가

-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·명확화

	현행	개정
항목	세무조사 대상 세목, 과세기간, 과세 이유, 과세액, 불복안내	과세 이유 기재 시 근거법령,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, 가산세 종류·금액·산출근거 추가

### 03 |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.

-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상자료 범위 확대

	현행	개정
대상 범위	연금계좌 납입액,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등 (증명서류 발급하는 기관이 제출)	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자료 추가

-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·보관 대상자 축소

	현행	개정
대상 범위	전년도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	30억원 이상